4단계 두뇌한국(BK)21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활용플랫폼 혁신 인력양성팀」 사업 운영
세부지침

제정 2021. 04. 12., BK21 규칙 제 1호
개정 2022. 04. 20., BK21 규칙 제 1호
개정 2022. 05. 23., BK21 규칙 제 1호
개정 2023. 02. 20., BK21 규칙 제 1호
개정 2024. 04. 30., BK21 규칙 제 1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시행)』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활용플랫폼 혁신 인력양성팀(이하 '바이오소재과학과 교육연구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바이오소재과학과 교육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2.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개발을 주도할 석·박사 대학원생 인력양성
3.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 신진연구인력 양성
4.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의 발굴, 응용, 평가와 관련된 연구사업
5. 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및 산업화사업
6.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연구 협력사업
7. 기타 교육연구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교육연구팀의 구성) ①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이라 한다)은 BK21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바이오소재과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팀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연구팀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교육연구팀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사업 공모에 교육연구팀 팀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팀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BK21사업 교육연구팀장 변경처리 기준』을 따른다.

②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연구팀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교육연구팀장의 책무) ①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연구팀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③ 교육연구팀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연구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4.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연구팀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개정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교수)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및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는『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라 한다)로 한다.
2. 사업팀 참여교수는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바이오소재과학과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 사업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소재과학과에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
3. 사업팀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신규참여교수는 별표4 의 BK index 논문실적이 최근 3년간 평균 2점 이상일 경우,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8조 (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및 제13조(지원대학원생)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참여대학원생은 BK사업단 연구장학금 미지급 학생이며, 지원대학원생은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선발된 BK사업단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으로 정의한다.

②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2.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4.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5.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참여신청서(서식13)를 사업단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단 자체프로그램 및 4단계 BK21 사업의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④ 교육연구팀에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대상자는 바이오소재과학과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이여야 한다.
2. 신입생을 대상자로 선발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60점 및 면접평가 4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고 70점 이상이면 선발한다(서식9, 서식11).
3. 재학생을 대상자로 선발하는 경우, 주저자로서 학회발표 20점(국내학술대회 1회 5점, 국제학술대회 1회 10점), 논문발표 30점(SCIE 국제학술지 주저자 70%, 공저자 30%로 환산하여 50% 미만 10점, 50-100% 20점, 100% 이상 30점), 지도교수 연구수행평가 40점 및 사업단 개최프로그램 참여도 10점(1회 5점, 2회 이상 1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고 70점 이상이면 선발한다(서식10, 서식12).
4.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60만원 이상, 2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은 130만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5.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6. 교육연구팀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참여교수 평가지표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여 목표달성이 미흡할 경우, 국고지원금 중 대학원생 지원 인원 및 지원항목의 비중을 10% 줄이고, 목표달성을 한 참여교수에게 그 비중을 높여 줄 수 있다.

⑥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 선발은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 하는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선발은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지원자는 지원서에 반드시 추천교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선발기준은 신규지원자와 계약연장자 모두 동일하게 가장 최근의 부산대학교 박사후 연수연구원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3.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는 사업팀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팀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연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5. 계약교수의 급여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6. 계약교수는 연 1편 이상의 SCI(E)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연 1편 이상의 SCI(E) 논문을 제출해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도교수는 1년간 박사후연구원 배정에서 제외한다.

7.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해외학자) 교육연구팀에 해외학자를 초빙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팀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2.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3.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4. 해외석학을 초빙할 경우, 교육연구팀의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처우를 결정한다.
5. 해외석학을 초빙할 경우,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산학협력전담인력) 교육연구팀에 두는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참여인력의 채용계약)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교육연구팀에서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급)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참여교수에게 연구 성과 및 사업단 운영 기여도에 따라 교육연구팀 운영비에서 [별표1]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 (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 교육연구팀 행정직원 등의 인건비는 매월 27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②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협력지원기준) 교육연구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별표3] 국제협력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과 같다.

제16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팀에 상설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교육연구팀장이 선임하는 2명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교육연구팀장이 선임하는 2명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단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2. 교육연구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및 업적평가 기준[별표 4]에 따른 평가 실시
3.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자체 경쟁 시스템 유지

4.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팀, 참여 교수 간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팀 자체적인 평가를 담당하고, 의결은 2/3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④ 교육연구팀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교 BK21사업운영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팀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팀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팀에 배정되는 BK21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세부사항)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팀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팀에서 이미 집행한 BK21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기준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활용플랫폼 혁신 인력양성팀이 BK21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 참여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불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금) 본 내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제3조 (지원시기) 성과급은 지원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차별 사업 종료 전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대상자)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사용용도) ① 성과급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과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국고지원금에서 지원하는 성과급의 경우 참여교수의 인건비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 6조 (성과급의 지원 조건 및 지원액수) 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한다.

1. 발표논문 : 개인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참여교수가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소속이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로 되어 있는 논문에 한하며, 제1저자와 교신저자 1인에게 지원한다.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분의 성과급을 저자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2. 특허 등록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한 특허에 한하며,

출원인 혹은 발명인 중 가장 공로가 큰 1인에게 지원한다. 단, 공동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대표 1인에게 지원한다.

3. 산학협력연구비 및 기술료수입: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력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책임자 1인에게 지급한다.

②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의 지원 액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여도의 비율에 의해 배분하며 교수 1인 연간 총액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기여도는 BK21사업의 회계연도의 해당되는 기간에 발표된 SCI(E) 논문, 특허등록, 산학협력연구비 및 기술료 수입을 BK index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BK Index = SCI(E) 논문 수(주저자)X(impact factor 또는 impact factor 학문별 상위% 중 높은 점수 택일) + 특허등록 수 + 산학협력연구비 + 기술료수입(Impact Factor 3미만은 2점, 3-6미만은 4점, 6-10미만은 6점, 10이상은 10점; impact factor 학문별 상위 10%이내 4점, 5%이내는 6점; 국내특허등록 0.5점, 국제특허등록 2점; 산학협력연구비는 3,000만원당 1점; 기술료 수입은 1,000만원당 1점으로 계산).
3. BK Index 총점에 따라 S(20%), A(50%), B(30%)로 등급을 평가하고, 총성과급/(등급에 따른 지급율 비율(%)의 합 X 등급에 따른 지급액 비율(%)로 하여 S급 130%, A급 100%, B급 70%로 산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는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성과를 정리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된 성과급 지원신청을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에 제출한다.
2. 교육연구팀에서는 성과급 산출기준을 기반으로 참여교수의 성과급의 계산하며, 이때 산출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시한다.
3. 교육연구팀은 최종 결정된 성과급을 개별적으로 참여교수에게 통보하고, 산학렵력단의 지급절차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4. 성과급 지급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타) ① 이 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별표2] 신진연구인력 등의 성과급 지급기준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활용플랫폼 혁신 인력양성팀이 BK21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촉진하고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생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불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자금) 본 내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제 3조 (지원시기) 성과급은 지원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차별 사업 종료 전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대상자)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 5조 (사용용도) 성과급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과급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한다.

제 6조 (성과급의 지원 조건 및 지원 액수) 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은 다음의 경우에 지원한다.

1. 발표논문 : 개인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사업 참여 신진연구인력, 또는 참여대학원생이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주소가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로 되어 있는 논문에 한하며, 제1저자 와 교신저자 1인에게 지원한다.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분의 성과급을 저자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2. 특허 등록 : 부산대학교 명의로 특허를 취득한 신진연구인력과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발명인 전원에게 실적을 인정한다.

②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의 지원 액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여도의 비율에 의해 배분하며 신진연구인력은 1인 연간 총액 300만원, 학생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진연구인력은 BK Index 총점에 따라 S(성과기준 130%), A(성과기준 100%), B(성과기준 70%)로 등급을 평가하고, 총성과급/(등급에 따른 지급율 비율(%)의 합 X 등급에 따른 지급액 비율(%)로 하여 S급 130%, A급 100%, B급 70%로 산정한다.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기준은 S급은 주저자 논문 2편 이상 및 공동저자논문 3편 이상, A급은 주저자논문 1편 및 공동저자논문 2편, B급은 공동저자논문 2편을 기준으로 한다. 단,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BK21사업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타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연구장학금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불가).

1. BK Index = SCI(E) 논문 수(주저자, 공동저자)X(impact factor 또는 impact factor 학문별 상위% 중 높은 점수 택일) + 특허등록 수 + 학술대회 발표실적
2. SCI(E) 논문실적은 주저자인 경우 Impact Factor 3미만은 2점, 3-6미만은 4점, 6-10미만은 6점, 10이상은 10점; impact factor 학문별 상위 10%이내 4점, 5%이내는 6점; 공동저자인 경우 환산편수를 0.1점으로 일괄 계산하고, 공동저자 논문실적의 상한은 2점으로 한다, 특허 실적은 국내특허등록 0.5점, 국제특허등록 2점으로 하고, 학술대회 발표실적은 구두발표 0.5점, 포스터발표 0.2점으로 계산하고, 학술대회 발표실적의 상한은 1점으로 한다.

제 7조(지원절차) ①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은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성과를 정리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된 성과급 지원신청을 작성하여 교육연구팀에 제출한다.

2. 교육연구팀에서는 성과급 산출기준을 기반으로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의 계산하며, 이때 산출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실시한다.
3. 교육연구팀은 최종 결정된 성과급을 개별적으로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통보하고, 산학렵력단의 지급절차에 따라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4. 성과급 지급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기타)

① 본 규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별표3] 국제협력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활용플랫폼 혁신 인력양성팀이 BK21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진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국제협력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자금) 본 내규에 의하여 지원하는 국제화경비의 재원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제 3조 (대상자) 국제협력 지원대상자는 본 교육연구사업팀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 4조 (국제화경비의 지원 조건 및 지원액수) ① 국제화경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허락 한다.

1. 국제학술대회 지원 시 학술대회 발표 논문별 대표저자인 참여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한다.
2.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한다.
3. 참여 대학원생의 단기 및 장기 해외연수는 각각 15일 이내 또는 그 이상 해외기관을 방문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4. 지원자가 많을 때는 제8조(대학원생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② 국제화경비(여비: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액수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1. 국제화경비 지원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지원한다(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단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항공료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3.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으로 한다(단,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
4.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5. 참여 대학원생의 단기 및 장기 해외연수는 항공료를 지원하며, 그 외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해외학자 초빙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2. 해외학자 초빙시 여비 및 체재비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
3. 해외학자 강사료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별표4] 업적평가 기준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과학과 실버질환 맞춤형 바이오소재 활용플랫폼 혁신 인력양성팀이 BK21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팀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를 위해 참여교수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자체 경쟁 시스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자) 업적평가 대상은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으로 한다.

제 3조 (사용용도) 원칙적으로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비 배정 및 지원대학생 선발에 적용한다.

제 4조 (기준)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개인별 업적평가는 다음과 기준에 따른다.

① BK21사업의 회계연도의 해당되는 기간에 발표된 SCI(E) 논문, 특허등록, 산학협력연구비 및 기술료 수입을 BK index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② BK Index = SCI(E) 논문 수(주저자)X(impact factor 또는 impact factor 학문별 상위% 중 높은 점수 택일) + 특허등록수 + 산학협력연구비 + 기술료수입(Impact Factor 3미만은 1점, 3-6미만은 2점, 6-10미만은 3점, 10이상은 5점; impact factor 학문별 상위 10%이내 2점, 5%이내는 3점; 국내특허등록 0.5점, 국제특허등록 2점; 산학협력연구비는 3,000만원당 1점; 기술료 수입은 1,000만원당 1점으로 계산).